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0000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훈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항공사고의 원인 규명 및 사고예방 업무 수행을 위해 항공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을 사고조사관(전문임기제)으로 채용하나, 일부 분야의 자격기준이 다른 임기제공무원의 채용기준과 비교시 높은 수준에 해당하여 응시 가능한 인력대상이 한정적인 면이 있어, 사고조사업무의 경쟁력 제고하고 우수 인재 확보하기 위해 사고조사관의 자격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종(고정익)분야 사고조사관 자격기준 개선(안 별표2)

종전의 자격기준은 동일분야의 다른 임기제공무원의 자격기준에 비해 높은 수준에 해당하므로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나. 객실안전·인적요소분야 사고조사관 자격기준 개선(안 별표2)

사고조사분야를 사고조사 국제기준에 따른 명칭으로 수정하고, 다양한 경험을 보유한 조사관 채용이 가능하도록 경력 인정범위도 확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항공·철도사고조사 위원회)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 예고·행정예고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림로232, 세종비즈니스센터 A동 604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 전자우편 : jihyun19@korea.kr

- 팩스 : 044) 868-240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전화 (044) 201-5434, 팩스 (044) 868-240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